

한국항공대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한국항공대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항공대학교가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① 한국항공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②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운영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처장을 한국항공대학교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 부서는 기획처로 한다. 단, 공개대상정보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국책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정보

② 한국항공대학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주기·시기 등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 후 한국항공대학교 홈페이지 공개정보란에 작성·공표한다.

제6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한국항공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보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조(정보공개업무 처리방법) ① 정보공개에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한국항공대학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항공대학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이 청구한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한국항공대학교는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된다.
- ④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국항공대학교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국항공대학교가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⑥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항공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항공대학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연구협력처장, 정보지원처장하고,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으로 한다.

제9조(심의회기능) ①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정보공개책임관이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본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 ②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의회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타사항) ①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한국항공대학교 실정에 맞추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